

광주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569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56922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14 선고 2020가단706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훈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윤철호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영곤

변론종결 2022. 4. 29.

판결선고 2022. 5. 20.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14. 선고 2020가단7062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9. 11.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1. 22. 접수 제505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1,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C(D의 배우자)은 2019.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제1심판결 3쪽 맨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2020. 3. 25. 위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 및 추심권자로서 실제 배당할 금액 24,997,000원 중 19,677,698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5,319,302원은 다른 압류 및 추심권자인 주식회사 J에 배당되었는데, 위 원고에 대한 배당금 중 11,186,701원은 원고의 추심채권자였던 피고 C에게 배당되었다.』

○ 제1심판결 4쪽 1행 [인정근거] 중 ‘을 제4호증의 1,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을 ‘을 제4호증의 1,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7행 ‘따라서’ 이하부터 11행 ‘남게 되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원고가 2020. 3. 25. 19,677,698원을 배당받은 이상,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판결 채권은 2020. 3. 25. 기준 73,376,579원[= 80,446,583원 + 12,607,694원(80,446,583원에 대한 2019. 7. 31.부터 2020. 3. 25.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19,677,698원]이 남게 되므로』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의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이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5,000만 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매도인인 K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 B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한 대여금 판결의 채권자로서 D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 중 일부인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우선 청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청구는 D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D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D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원고가 D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D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D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 7,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D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설령 D의 처인 피고 C이 2018. 6. 30. F을 통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을 D의 자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5,000만 원과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500만 원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성립된 2,500만 원은 피고 C의 대위변제에 의한 공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피고 B이 납부해 온 사실, ③ D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D와 피고 B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와 피고 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대위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D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 및 D의 피고 B을 대위한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각

대위행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시장, 순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와 피고 B의 무자력 상태는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피고 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및 순차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D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채승원, 판사 유현주, 판사 신호승

별지